

PPA 계약단위 변경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관련 Q&A

('26.04.01 작성) ※ 관련규정 변경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소통UP!
스마트業!
파워UP!



Q1 적용대상 및 적용일자는?

제 도

- A1
- ▶ (적용대상)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 PPA : 계약단위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 배전용 :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 배전용 : 기존에도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 내 1이용계약만 체결 중
 - ▶ (적용일자) '25.06.01(일)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발전사업허가일자, 한전 서류 접수일자가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임에 유의바랍니다.

Q2 PPA 계약단위 결정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제 도

- A2
- ▶ ① 전력시장거래(KPX)를 위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발전기와 한전과 전력거래를 위한 PPA 체결 발전기간의 계통접속 조건 형평성 도모를 위함

계약유형	전력거래 상대방	계통접속 관련 규정	계약단위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구입계약(PPA)	한국전력공사(KEPCO)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산업부 인가)	1발전구역 허가별 1계약 (예외 적용)	1발전구역 1계약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한국전력거래소(KPX)		1발전구역 1계약	

- ▶ ② 동일회계주체가 일정 규모(설비용량 90kW) 이상 신재생 발전기에 부과되는 계통의무(신재생 감시 제어장치 설치) 회피 등을 위하여 기준용량 미만으로 발전사업허가 분할 신청
→ 계통운영 부담 가중 및 소수 사업자에게 계통의무 및 출력제어 편중으로 사업자간 형평성 저하(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PPA 신청내용	총 설비용량	감시제어장치 설치 여부
A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89kW × 5호	445kW	×
B		199kW × 1호	199kW	○

Q3 1회계주체(동일회계주체) 해석 명확화의 의미는?

회계주체

- A3
- ▶ 기존에는 1회계주체(동일회계주체)를 인격의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사업자등록번호 상이 여부 X)해왔으나, 이를 이용하여 고압연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후 PPA 신청하는 경우 빈번 발생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PPA 신청내용	총 설비용량	계약방법
홍길동(개인)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499kW × 1호	499kW	저압 499kW × 1호 (개별회계주체로 판단)
홍길동 에너지 (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499kW × 1호	499kW	저압 499kW × 1호 (개별회계주체로 판단)

- 사실상 동일한 회계주체임에도 고압연계 규정 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 및 신청하여 저압연계
- ▶ 이러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개인, 법인 무관하게 명목상 단순 식별번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리주체인지를 판단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PPA 신청내용	계약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홍길동(개인)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499kW × 1호	저압 499kW × 1호 (개별회계주체로 판단)	고압 998kW × 1호 (동일회계주체로 판단)
홍길동 에너지 (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499kW × 1호	저압 499kW × 1호 (개별회계주체로 판단)	

※ 특히 개인 발전사업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1인 법인 혹은 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여러 법인인 경우, **우선 접수 후 관련서류를 검토, 동일회계주체로 판단 시 발전사업허가 보완 및 1계약 체결 요청 가능성 높음**

Q4 1발전구역의 의미와 판단 근거는?

발전구역

- ▶ 1발전구역이란 계약의 물적 기초 개념으로서, 비교적 변동이 용이하지 않은 구역인 1구내 또는 1건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6항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이라 함은 ① 담, 울타리, 건물,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② 허가받은 구역을 말하며, 기타 ③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를 준용합니다.

- 발전구역은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and 조건”)하는 구역을 의미하며, ‘하나의 구역’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은 기본공급약관(③)을 준용합니다.

A4

- ▶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건물·토지 소유권이 동일하다면 건물 동(棟), 지번에 상관없이 하나의 발전구역으로 판단하며, 인접한 2이상의 구내(발전구역)를 1회계주체가 소유·관리하거나 구내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합니다.
 - (1구내) 담장,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
 - * 동일 소유자(사용자)의 여러 건물 또는 토지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내 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내 단위로 판단함
 - (1건물) 층별/호실별 소유권 구분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1동의 건물

Q5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구역 구분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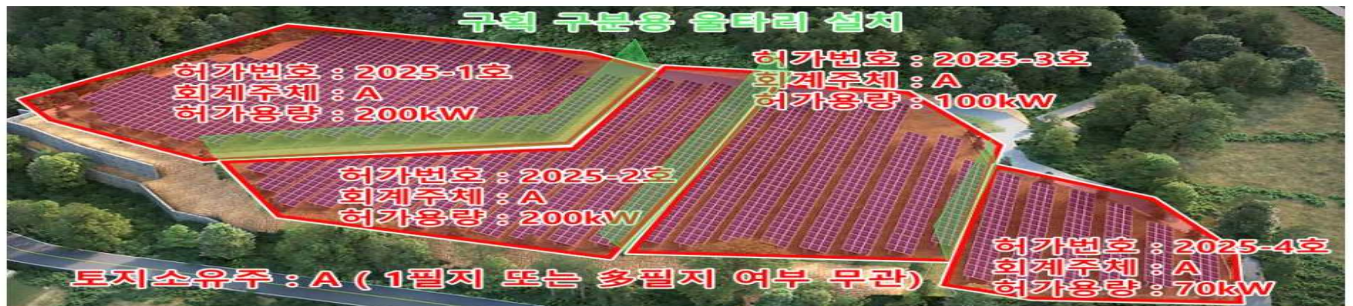
발전구역

- ▶ 아래 예시처럼 구획 구분용 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고 A사업자가 전체구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므로 각 발전소의 발전구역 구분은 불가합니다.

(※ 지번은 전기사용장소 및 발전구역 구분 기준이 아니므로, 단순히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 불가)

- * 명목상 토지 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주체가 1인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토지를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가능

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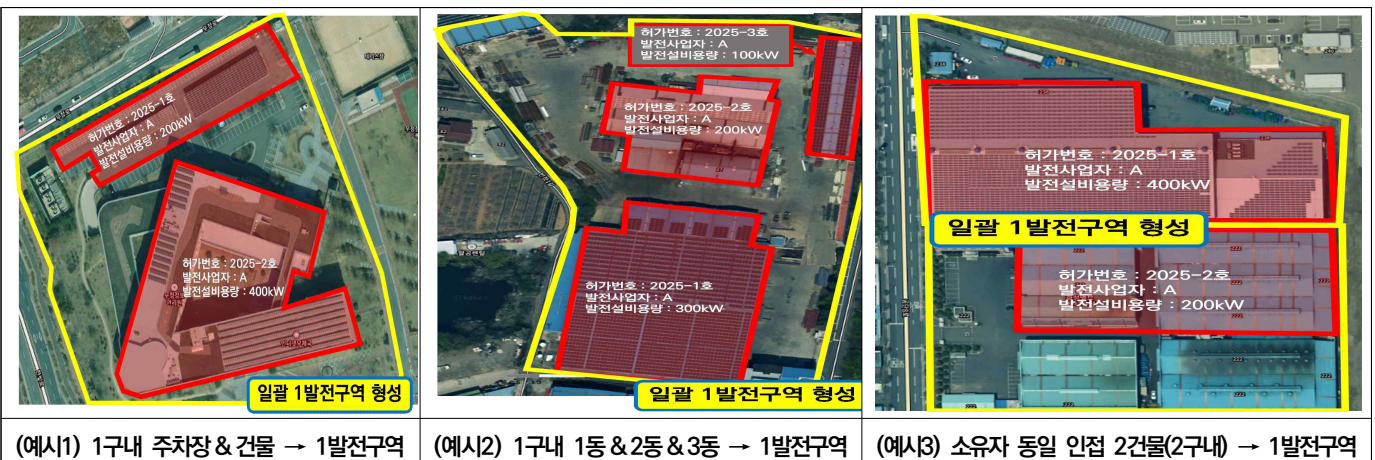
Q6 (여러 건물(棟)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구역 구분 가능 여부

발전구역

- ▶ 여러 건물(棟)이 1구내를 이루거나, 소유자가 동일한 2구내가 인접할 경우 건물(棟)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각 발전소의 발전구역 구분은 불가합니다. (∴ 아래 예시 1~3은 고압 600kW PPA 1계약 체결)

- * 구내 건물 소유주가 명목상 상이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주체가 1인으로 판단 되는 경우 1구내를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발전계약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발전구역은 상이하게 판단 가능

A6



(예시1) 1구내 주차장 & 건물 → 1발전구역

(예시2) 1구내 1동 & 2동 & 3동 → 1발전구역

(예시3) 소유자 동일 인접 2건물(2구내) → 1발전구역

Q7 1계약단위의 판단 근거는?

계약단위

A7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4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단위는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에 1이용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계약의 단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Q8 자가용PPA의 계약단위도 사업용PPA와 동일하게 판단하는지?

계약단위

A8

- 동일회계주체에 대하여 1발전구역 1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자가용 발전설비(PPA)의 경우에는 상용전력 계약단위 구분 여부에 따라, 동일회계주체더라도 1상용전력당 1PPA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시1) 1건물 옥상에 동일회계주체의 자가용PPA + 사업용PPA 신청 : 각각 1계약 체결 가능
 - (예시2) 건물 내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ex : 101호, 102호) 각 계약단위에 연계하여 1건물 옥상에 상용전력 계약단위별 자가용PPA 2개 체결 가능

Q9 사업용PPA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별도 체결이 가능한지?

계약단위

A9

- 사업용PPA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므로, 동일발전구역에 동일회계주체가 2개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1개는 사업용PPA, 1개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허가별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계전압은 합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신청내용	최종 계약방법
A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기존 저압수전 공장 위)	499kW × 1호 (저압, 사업용PPA)	고압 499kW PPA 계약체결 가능 (동일발전구역 내 사업용PPA 및 사업용 배전용 합산용량 500kW 초과하므로 고압연계)
A		999kW × 1호 (고압, 사업용 배전용)	고압 999kW 배전용 계약체결 가능
A		499kW × 1호 (저압, 자가용PPA)	저압 499kW 자가용 PPA 계약체결 가능 (자가용PPA : 발전사업용 설비와 별개로 계산)

Q10 기존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구역에 발전설비 추가 설치 시 신청방법

계약단위

A10

- 기존 PPA 운영중인 발전사업자가 동일한 발전구역에 추가로 발전설비를 설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PPA 중 하나를 '증설'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100kW, 200kW로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300kW 추가 PPA 신청
→ 기존 PPA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400kW 혹은 500kW로 증설 신청. 이 때 연계전압은 동일 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설비 합산용량이 500kW 초과(총 600kW)하므로, 증설하는 계약은 고압 연계 +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대상이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발전소 3개를 모두 병합하여 600kW 고압 1계약으로 병합 가능

Q11

동일발전구역 내에서 2개의 PPA 계약을 체결한 1회계주체가 계약방식을 배전용(전력거래소 거래)으로 전환 희망 시 업무처리

계약전환

- A11
- 원칙상 2개의 PPA 계약을 병합하여 1개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89kW × 2개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두 발전소 모두 배전용으로 전환 신청
→ 이용규정상 제16조.4항에 따라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 내 1이용계약 체결이 원칙이므로, 기존 PPA의 계약단위 구분이 인정되어 별개로 운영 중이었더라도, 계약 전환 시에는 1계약 체결 필요
 - 단, 한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분할 계약 유지 가능
 - (예시) 동일 구역에서 89kW × 2개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두 발전소 모두 배전용으로 전환 신청
→ 이용규정 제16조.4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병합에 따른 ① 추가적인 접속설비 교체가 필요하고, ② 각각의 발전소에 이미 감시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있거나, ③ 새롭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 가능

Q12

기존 PPA가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된 경우에도 추가 발전설비 설치 시 반드시 증설해야 하는지?

계약단위

- A12
- 원칙적으로는 (Q10)처럼 기존 PPA 중 하나를 ‘증설’ 신청해야하나,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해당 발전기의 설비용량 증가(증설)이 불가하고, 장기고정가격계약 파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가 발전설비에 대한 PPA 계약단위 분리가 인정됩니다.
 - (예시) 동일 구역에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100kW, 200kW PPA 운영 중인 사업자가 300kW 추가 PPA 신청
→ 장기고정가격계약 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추가 300kW PPA는 별도의 계약체결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신규 계약체결 PPA의 연계전압은 동일발전구역에서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500kW 초과(총 600kW)하므로, 고압 300kW로 계약체결(기존 PPA는 연계전압 변경 불필요)

Q13

기준일 이후 1발전구역에 1회계주체만 PPA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계약단위

- A13
- 계약단위 결정기준 변경 적용일 이후에도, 1발전구역에 여러 회계주체가 각 회계주체별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각 회계주체별로 하나의 PPA 계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신청내용	계약방법	
			기준 변경 전	기준 변경 후
A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99kW × 5호 (저압, 사업용PPA)	저압 99kW × 5호 (각 허가별로 PPA 체결)	저압 495kW × 1호 (PPA 1계약만 체결가능)
B		99kW × 5호 (저압, 사업용PPA)	저압 99kW × 5호 (각 허가별로 PPA 체결)	저압 495kW × 1호 (PPA 1계약만 체결가능)
C		99kW × 5호 (저압, 사업용PPA)	저압 99kW × 5호 (각 허가별로 PPA 체결)	저압 495kW × 1호 (PPA 1계약만 체결가능)

 - 다만,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최종 계약방법과 무관하게 상업운전개시 이후더라도 계약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실소유·운영·관리	발전장소	신청내용	최종 계약	(적발 후) 계약 정상화 시 계약방법
A	A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495kW × 1호 (저압, 사업용PPA)	495kW × 1호 (저압, 사업용PPA)	1,495kW × 1호 (고압,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B			495kW × 1호 (저압, 사업용PPA)		
C			495kW × 1호 (저압, 사업용PPA)		

Q14

(Q9) 혹은 (Q12) 처럼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임에도 예외적으로 계약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기준은?

감시제어

A14

▶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계약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기준은 '동일회계주체가 1발전구역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의 합산 설비용량'으로 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신청 구분	발전소 정보	최종 계약방법	감시제어 설치여부
A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기존 저압수전 공장 위)	상업운전 중 (장기고정 가격계약)	89.9kW × 1호 (저압, 사업용PPA)	89.9kW × 1호 (저압, 사업용PPA)	비대상
A		신규신청	89.9kW × 1호 (저압, 사업용PPA)	89.9kW × 1호 (저압, 사업용PPA)	대 상 (사업용 설비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A		신규신청	89.9kW × 1호 (저압, 사업용 배전용)	89.9kW × 1호 (저압, 사업용 배전용)	대 상 (사업용 설비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A		신규신청	89.9kW × 1호 (저압, 자가용PPA)	89.9kW × 1호 (저압, 자가용PPA)	비대상 (발전사업용과 별개로 판단)

Q15

기존 1발전구역에서 여러 회계주체가 운영 중이던 PPA를 1회계주체가 양수받은 경우 계약단위 유지가 가능한지?

양도양수

A15

▶ 기존 여러 회계주체가 운영 중이던 발전소의 양도양수로 계약당사자가 1회계주체로 변경될 경우에는, 합산 설비용량 1MW 이내에서 기존의 PPA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 단, PPA 양도양수 결과 1회계주체가 1발전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들의 합산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1MW 초과분의 PPA 계약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전력거래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사업자명		발전장소	기존 PPA 계약정보	양수인 '홍길동'의 최종 계약방법
양도인	양수인			
A	홍길동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999kW × 1호 (고압, 사업용PPA, 감시제어 미설치)	999kW × 1호 (고압, 사업용PPA, 감시제어 미설치)
B			999kW × 1호 (고압, 사업용PPA, 감시제어 미설치)	999kW × 1호 (고압,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감시제어 미설치)

Q16

'25.05.31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기준 적용 여부는?

허가변경

A16

▶ 기재사항 변경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기재사항 변경 내용	개정 기준 적용여부
최초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은 '25.05.31 이전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 (발전사업허가번호는 변동 없음을 전제로 함)	허가용량 증가(기존 허가용량의 110% 초과), 발전주소 변경(발전구역 변경 수반) 등	적 용
	허가용량 증가(기존 허가용량의 110% 이내), 허가용량 감소(감소폭 무관), 단순 공급전압 변경, 발전주소 변경(발전구역 변경 미수반), 발전소명 변경, 사업허가기간 연장, 양도양수 등	미적용

▶ 발전사업허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설비용량 증설(기존 허가용량의 110% 이내) 시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7

'25.06.01 전 신청한 발전사업허가로 PPA 접수하였으나 부담금 미납 등으로 접수 취소되고, '25.07.31 PPA 재접수한 경우 소급적용 여부

재접수

A17

- ▶ 개정된 업무기준의 적용대상은 '25.06.01 이후 신규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발전사업자입니다.
- PPA 신청일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지자체 등 허가권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25.06.01 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가 접수취소 등으로 '25.06.01 이후 PPA 재신청하더라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Q18

발전사업허가 신청일 증빙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A18

- ▶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자는 '25.05.31 이전이나, 발전사업 허가일자가 '25.06.01 이후인 발전사업 허가증으로 한전에 PPA를 접수하는 경우, 기존의 규정(계약단위 결정기준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으로 표기된 발전사업허가 접수증명서」 1부
- ▶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대구본부 관할 10개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청, 김천시청, 경산시청, 포항시청, 경주시청, 영천시청, 성주군청, 청도군청, 고령군청, 영덕군청)에는 '25.06.01 이후 교부되는 발전사업허가증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전면 '9. 기타'란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Q19

주민번호(법인번호)가 상이하나 1회계주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회계주체

- ▶ ※ 주의 : 아래 예시 외에도 서류 검토 등을 통해 1회계주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각 발전사업자간 주민(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하나, 서류검토 후 1회계주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1	법인번호가 상이한 A, B 두 개의 법인 명의로 동일발전구역에 각각 PPA(배전용)를 신청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두 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내이사 등 구성이 동일(유사)하거나,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2	소유자 A의 건물(토지)에 B 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자 A와 임대차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해당 발전구역에 B, C, D 명의로 각각 PPA(배전용)를 신청한 경우
3	동일한 발전구역에 A 사업자가 본인(개인) 명의로 PPA(배전용)를 신청하고, 본인을 대표이사(혹은 사내이사 등)로 하는 법인으로 PPA(배전용)를 신청한 경우
4	동일한 발전구역에 부모(A)와 자녀(B) 명의로 각각 PPA(배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자녀(B)가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 권리행사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5	동일한 발전구역에 자녀1(A)과 자녀2(B) 명의로 각각 PPA(배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 권리행사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6	동일한 발전구역에 가족(부부,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특히, 가족간 형식적 임대차계약·자금출처(소득금액, 재산, 증여내역 등) 소명 불가·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A19

- ▶ 주민번호(법인번호)가 상이한 경우, 위 대표 예시의 경우라도 우선 한전 계약 접수 후 담당자 판단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및 회계주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접수순번은 부여되나, 소명자료 제출 및 한전 담당자의 별도회계주체 판단 전 설계 협의 불가)
- ▶ 별도 회계주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부부의 경우 부부별산제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성격상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별도 회계주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이 외에도 1회계주체의 판단은 사업부지의 소유 및 계약관계, 발전사업 명의자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발전사업 운영주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발전사업 진행 시 한전 규정 회피를 목적으로 단순 명의 대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 필요한 경우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 3항 및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제3면. 제3조.2호에 따라 필수구비서류 외에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PPA 접수(상업운전개시) 후라도 계약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 ▶ 규정 회피 신청 확인에 따른 접수취소, 연계지연,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접수순번 상실)에 따른 연계불가, 공사지연,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소요, 발전사업자와 시공사간 분쟁 등)은 한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별도 회계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전에서 안내드리지 않으며, 발전사업자 각자가 재산 및 소득의 형성 과정, 자금의 출처,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별도 회계주체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거나 불가할 경우 동일회계주체로 판단합니다.
- 단순 1~2종의 서류로 동일회계주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필요 시 시공업체 및 발전사업자 면담 병행

- 아래는 우리본부에서 **동일회계주체로 판단하여 계약정상화(취소 등)한 사례**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예 시	내 용(아래는 and 조건임)
1 (부부)	· 부부(A, B)의 PPA 및 전기사용 신청서상 동일한 연락처 기재 · 건물소유주(A) 및 사용자(B)간 형식적 임대차 계약서 제출(입금계좌 미기재 등) · A의 자금출처 소명 불가(소득 없음 등) · 한전 서류 제출 요청 후 A의 시공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2 (미성년)	· 미성년자녀(A)와 부(B)가 신청한 경우
3 (성년)	· 거주지가 같은 성년자녀(A)와 부(B)가 신청하였으나, 성년자녀(A)의 자금출처 소명 불가(소득없음 등) · 건물소유주(B)와 사용자(A)간 형식적 임대차 계약서 제출(입금계좌 등 미기재)
4 (법인)	· 대표자 및 이사진의 구성이 동일(유사)하고, 가족관계로 판단된 경우 · 각 법인간 설립시기가 유사하고, 법인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 아래는 우리본부에서 **별도회계주체로 판단하여 별도 계약단위를 인정**한 사례*오니 참고 바랍니다.

예 시	내 용
1 (부부)	· 건물주와 부부(A, B)간 유상임대차 계약서 체결 · A, B 자금출처 모두 소명 가능(소득금액 증명서 혹은 국세청 증여신고내역 등) · 한전 서류 제출 전 A, B 각자 시공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증빙 가능
2 (미성년)	· 현재까지 없음
3 (성년)	· (거주지 무관) 성년자녀(A)와 부(B)가 신청하였으나, 성년자녀(A)와 부(B) 모두 자금출처 소명 가능 · 건물소유주(B)와 사용자(B)간 적정 임대차계약 체결
4 (법인)	· 법인 소재지는 동일하나, 대표자가 상이하고 태양광 사업 분양공고, 발전소 토지 매입 신고서 등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임을 소명한 경우

- * 단, 전력구입계약(PPA) 체결 후에도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동일회계주체로 판단될 경우 계약정상화 가능
- 동일회계주체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회계주체 판단서류 제출 요청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계약 분할신청 여부 확인서(붙임4, 인감 혹은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요청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